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8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고동진 · 김 건
주호영 · 박준태 · 유용원
강대식 · 조정훈 · 이만희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,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·현황,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·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한편,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, 가족상봉·서신교환,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

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,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
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소재”를 “생사 여부, 소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국군포로의 그 가족과의 상봉이나 서신교환에 관한 사항

2의3.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국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기본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국군포로의 <u>소재</u> 및 현황	1. ----- <u>생사 여부, 소재</u>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국군포로의 그 가족과의 상봉이나 서신교환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2의3.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